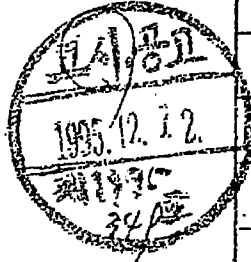


서울특별시

우100-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/ 전화 (02)731-6352 / 전송 731-6755
 처리부서 : 도시개발과 (시청본관2층) 담당 김효식

문서번호 도개58541-9	취급	사 장	
시행일자 '95. 12.	보존	양도	
(경유) (제195.12.12)	국 장 전 결		
수신 내부결재	과 장	법무담당관실 사필	
참조	계 장	관리계장	
	기 안 김 효 식	협조	



제목 서울 중계2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변경 승인

1. 주공 서울(택개) 1312-6367('95.9.20)호 및 서울(택개) 1312-7819('95.11.21)호와 관련입니다
2. 건설부 고시 제1989-424호(89. 7.27)로 개발계획 승인된 서울중계2 택지개발사업 지구에 대하여 대한주택공사 서울사업본부장으로 부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 계획 변경승인 신청이있어 내용검토한 바, 지적확정 측량결과로 인한 예정지구 지정변경과 소유권이전 지연에 따른 민원해소를 위한 부분준공추진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개발 계획 변경승인 사항으로
3.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및 제8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자 합니다.

- 다 음 -



가.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

지구명	위 치	면 적 (㎡)			변경지정 일 자
		기 정	변 경	증 감	
서울 중계2 지구	서울시 노원구 중계동, 하계동일원	1,346,696	1,344,653.2	감2,042.8	'95.12

나. 택지개발계획 변경

- 1) 개발계획의 명칭 : 서울중계2지구 택지개발계획
- 2)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
 - 가) 사업시행자 : 대한주택공사



나) 대표자성명 : 대한주택공사사장 김 동 규

다) 주 소 :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254번지

3) 개발계획의 개요

가) 목적 : 주택건설을 위한 택지의 효율적인 개발과 저렴한 공급으로 주택난을 완화하고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사회건설에 기여코져 함

나) 수용인구 및 주택에 관한계획

구 분	기 정	변 경			비 고
		계	1 공 구	2 공 구	
수용인구(인)	66,726	66,260	66,260	-	감 466
주택계획(호)	16,978	16,860	16,860	-	감 118

4) 개발 기간 1공구 : '89.7.27 ~ '95.12.31 (변경없음)

2공구 : '89.7.27 ~ '96.12.31 (변경)



5)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

구 분	기 정	면 적 (㎡)			증 감	구성 비 (%)
		계	1 공 구	2 공 구		
합 계	1,346,696	1,344,653.2	1,323,182.1	21,471.1	감 2,042.8	100
주택건설용지	700,300	699,293.8	699,293.8	-	감 1,006.2	52.0
공동주택용지	699,270	698,240.8	698,240.8	-	감 1,029.2	51.9
근린생활시설용지	1,030	1,053.0	1,053.0	-	증 23.0	0.1
상업용지	41,550	41,788.7	41,788.7	-	증 238.7	3.1
공공시설용지	604,846	603,570.7	582,099.6	21,471.1	감 1,275.3	44.9
도로	241,367	242,703.7	234,896.4	7,807.3	증 1,336.7	18.0
공원및녹지	121,713	120,233.5	119,964.4	269.1	감 1,479.5	9.0
학교	144,300	144,298.9	130,904.2	13,394.7	감 1.1	10.7
공용의청사	16,105	19,192.7	19,192.7	-	증 3,087.7	1.4
시 장	26,600	26,454.5	26,454.5	-	감 145.5	2.0

구 분	면 적 (m ²)					구성비 (%)
	기 정	변 경			증 감	
		계	1 공 구	2 공 구		
여객자동차 정류장	19,920	19,448.0	19,448.0	-	감 472.0	1.4
사회복지시설	4,021	3,389.0	3,389.0	-	감 632.0	0.3
종교 시설	13,450	13,603.0	13,603.0	-	증 153.0	1.0
자동차검사 시설	9,500	9,455.8	9,455.8	-	감 44.2	0.7
문화 시설	1,350	1,321.8	1,321.8	-	감 28.2	0.1
체육 시설	3,470	3,469.8	3,469.8	-	감 0.2	0.3
종합의료시설	3,050	-	-	-	감 3,050.0	-

6)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

가) 위치 :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, 하계동 일원

나) 면적

(단위 : m²)

기 정	변 경			증 감
	계	1 공 구	2 공 구	
1,346,696	1,344,653.2	1,323,182.1	21,471.1	감 2,042.8

7)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 및 권리명세서 : 별첨

8) 개발계획 변경 평면도 및 지적도 : 별첨

9) 조건

○ 건설부 택지 30261-17467('89.7.27)호 등지구 지정변경 및 택지개발계획 승인시 부한 조건을 본 승인 조건으로 한다.

첨 부 : 1. 고시문 1부.

2.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택지개발계획 변경 승인 도서 1부.

3. 변경승인 신청서 1부. 끝.

서울특별시장

(제2안)

수신 대한주택공사 서울사업본부장

참조 택지개발부장

제목 서울 중계2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변경승인

1. 주공 서울(택개) 1312-6367('95.9.20)호 및 서울(택개) 1312-7819('95.11.21)호와
관련입니다

2. 위 대호로 귀공사에서 작성 제출한 서울 중계2지구의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
및 개발계획 변경승인 신청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규정에 의거 예정지구를 변경
지정하고, 같은법 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8조제1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발계획
변경승인하니 타법에 규정되어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관계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한
후 시행하기 바랍니다.

"제1안 가~나항 이기시행"

- 첨 부 : 1.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변경 도서 1부.
 2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서 1부.
 3. 지적도 1부.
 4. 개발계획(변경) 도서 1부. 끝.

서 울 특 별 시 장

(제3안)

수신 건설교통부장관

참조 택지개발과장

제목 서울 중계2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변경승인 보고

1.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서울중계2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
제3조 규정에의거 예정지구를 변경지정하고, 개발계획 변경을 같은법 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
제18조 제1항의 규정에의거 별첨과같이 승인하였기 보고합니다.

- 첨 부 : 1. 고시문 및 승인서 사본 각 1부.
 2.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변경 도서 1부.
 3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서 1부.

4. 지적도 1부.

5. 개발계획서 및 개발계획(변경) 도면 1부. 끝.

서울특별시

(제4안)

수신 총무처장관

참조 법무담당관

1. 다음과 같이 관보 게재 의뢰하오니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관보 게재 구분 : 고시

나. 게재 건 명 : 서울중계2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승인

다. 법적 근거 :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4항 및 제8조제2항

첨부 고시문 사본 2부. 끝.

서울특별시

(제5안)

수신 노원구청장

참조 도시정비과장



제목 서울 중계2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변경승인 통보

1.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서울 중계2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서울시고시 1995- 호('95.12.)로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변경 승인 하였기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고

2. 동 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행부서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주기 바랍니다.

첨부 1. 승인서 및 고시문 사본 1부

2.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택지개발계획 변경승인 도서 1부. 끝.

서울특별시

고 시(안)

2444사 담당자	1995.12.24 법제국장	제3(2)호 검무담당관
18m	문	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1995-349호

서울중계2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변경승인

1. 건설부고시 제1989-424호(89.7.27)로 개발계획 승인된 서울중계2택지개발사업지구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변경하고 개발계획을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승인하였기 같은법 제3조제4항 및 같은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국 도시개발과(731-6752) 및 대한주택공사 서울사업본부(3452-6457)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1995년 12월 일

서울특별시장

가.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

지구명	위치	면적 (m ²)			변경지정 일자
		기정	변경	증감	
서울 중계2 지구	서울시 노원구 중계동, 하계동일원	1,346,696	1,344,653.2	감2,042.8	'95.12

○ 변경사유 :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

나. 택지개발계획 변경

- (1) 개발계획의 명칭 : 서울중계2지구 택지개발계획
- (2)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
(가) 사업시행자 : 대한주택공사

(나) 대표자성명 : 대한주택공사사장 김 동 규

(다) 주 소 :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254번지

(3) 개발계획의 개요

(가) 목적 : 주택건설을 위한 택지의 효율적인 개발과 저렴한 공급으로 주택난을 완화하고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사회건설에 기여코져 함

(나) 수용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

구 분	기 정	변 경			비 고
		계	1 공 구	2 공 구	
수용인구(인)	66,726	66,260	66,260	-	감 466
주택계획(호)	16,978	16,860	16,860	-	감 118

(4) 개발기간 1공구 : '89.7.27 ~ '95.12.31 (변경없음)

2공구 : '89.7.27 ~ '96.12.31 (변경)

(5)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

원본
대조필

구 분	면 적 (㎡)					구 성 비 (%)
	기 정	변 경			증 감	
		계	1 공 구	2 공 구		
합 계	1,346,696	1,344,653.2	1,323,182.1	21,471.1	감 2,042.8	100
주택건설용지	700,300	699,293.8	699,293.8	-	감 1,006.2	52.0
공동주택용지	699,270	698,240.8	698,240.8	-	감 1,029.2	51.9
근린생활시설 용지	1,030	1,053.0	1,053.0	-	증 23.0	0.1
상업용지	41,550	41,788.7	41,788.7	-	증 238.7	3.1
공공시설용지	604,846	603,570.7	582,099.6	21,471.1	감 1,275.3	44.9
도로	241,367	242,703.7	234,896.4	7,807.3	증 1,336.7	18.0
공원및녹지	121,713	120,233.5	119,964.4	269.1	감 1,479.5	9.0
학교	144,300	144,298.9	130,904.2	13,394.7	감 1.1	10.7
공용의청사	16,105	19,192.7	19,192.7	-	증 3,087.7	1.4
시장	26,600	26,454.5	26,454.5	-	감 145.5	2.0

구 분	면 적 (m ²)					구 성 비 (%)
	기 정	변 경			증 감	
		계	1 공 구	2 공 구		
여객자동차 정류장	19,920	19,448.0	19,448.0	-	감 472.0	1.4
사회복지시설	4,021	3,389.0	3,389.0	-	감 632.0	0.3
종교 시설	13,450	13,603.0	13,603.0	-	증 153.0	1.0
자동차검사 시설	9,500	9,455.8	9,455.8	-	감 44.2	0.7
문화 시설	1,350	1,321.8	1,321.8	-	감 28.2	0.1
체육 시설	3,470	3,469.8	3,469.8	-	감 0.2	0.3
종합의료시설	3,050	-	-	-	감 3,050.0	-

(6)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

(가) 위치 :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·하계동 일원

(나) 면적

(단위 : m²)

기 정	변 경			증 감
	계	1 공 구	2 공 구	
1,346,696	1,344,653.2	1,323,182.1	21,471.1	감 2,042.8

(7)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 및 권리명세서(변경분) : 별항

(8) 개발계획 변경 평면도 및 지적도 : 생략

(9) 변경사유 : 토지이용계획변경 및 부분준공 추진

